

제427회 국회
(임시회)

법 제사법위원회 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7월25일(금)

장 소 법 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8)
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6)
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61)
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23)
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80)
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25)
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2)
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3)
9.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63)
1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24)
1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81)
1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27)
13. 검찰청법 폐지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30)
14. 공소청법안(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54)
15.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28)
16. 중대범죄수사청법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46)
17.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32)
18.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27)

상정된 안건

13. 검찰청법 폐지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30) 3
14. 공소청법안(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54) 3
15.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28) 3

16. 중대범죄수사청법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46)	3
17.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32)	3
18.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27)	3
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8)	21
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6)	21
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61)	21
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23)	21
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80)	21
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25)	21
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2)	21
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3)	21
9.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63)	22
1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24)	22
1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81)	22
1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27)	22

(14시12분 개의)

○소위원장 김용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심사한 후 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70년간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해 왔던 절대 권력의 잘못과 폐해를 바로잡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원래 있어야 했던 자리로 돌려놓는 역사적인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만들어 주신 자리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노력이 깃들어 있는 자리기도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역사의 한 장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자리가 갖는 무게의 엄중함을 생각하시고 각자 최선을 다해서 오늘 회의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3. 검찰청법 폐지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30)
14. 공소청법안(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54)
15.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28)
16. 중대범죄수사청법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46)
17.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32)
18.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27)

(14시13분)

○소위원장 김용민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8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준 운영 방식과 동일하게 언론의 취재는 여기까지만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환철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자료 두 권으로 나눠 드렸는데요 의사일정 13항부터 18항까지입니다.

먼저 자료가 합쳐서 한 30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7항까지 돼 있는 공소청·중수청 설치 관련 5개 법률안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1쪽의 관련 5개 법률안의 심사경과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총괄적 검토하고 입법 배경이 있는데요. 1차·2차 검경수사권 조정에 의해서 현재 수사권은 크게 3개 기관으로 분할되어 있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현재도 여전히 검찰권이 막강하기 때문에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하는 법률안이 제출되었다는 부분 설명드리고 4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의 법률안 주요 내용입니다.

일단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김용민 의원안 제출하셨고요.

두 번째, 제명으로 공소청 설치법인데요. 박은정 의원안은 공소청법안입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성은 일단 김용민 의원안은 8개 장, 45개 조문, 4개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박은정 의원안은 6개 장, 32개 조문, 8개 부칙으로 돼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린다면 공소청의 설치·직무 관련해서 범죄수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국가송무도 제외하는 설치·직무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조직체계를 현재 3단계 구조에서 2단계 구조로 변경시키고 그에 따라서 항고만 인정하고 재항고는 삭제하는 조항이 조직체계에 있고요.

공소청장의 지위는 차관급으로 하고 2년 임기, 65세 정년,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법무부장관의 제청과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이라는 4단계를 거쳐서 공소청장이 임명된다는 규정이 있고요.

수사관 관련 규정이 있고요.

다섯 번째로 검사정원·보수·징계 등이 법안에 담겨 있고요.

여섯 번째로 공소를 경제하기 위한 기구로서 공소심의위원회 또 박은정 의원안은 기소심의위원회, 이런 장치로 공소를 경제하기 위한 기구가 설치돼 있고요.

금지행위로서 검사의 정치 관여 행위가 금지되고 직권남용 시에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하는 안이 있습니다.

5쪽 하단의 조문 체계는 순서대로 빠짐없이 나열한 거고요. 참고로 갈음하고요.

넘기시면서 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쪽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의 제명, 중대범죄수사청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법안으로 황운하 의원안 돼 있고요. 민형배 의원안은 7개 장, 37개 조문, 3개 부칙으로 돼 있습니다. 황운하 의원안은 5개 장, 31개 조문, 3개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중대범죄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내란·외환·부패, 여러 가지로 정의하고요. 이와 관련된 범죄까지 포함해서 ‘중대범죄 등’으로 정의하는 정의 조항이 있고요.

중수청의 소속을 민형배 의원안처럼 행안부장관으로 둘 거냐, 아니면 황운하 의원안처럼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둘 거냐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중수청장의 지위를 차관급으로 하고 임기는 2년 또는 3년, 65세 정년으로 하고 자격은 15년 이상의 법조·수사 경력 등이 있는 사람으로서 중수청장의 경우에는 변호사 자격이 필요하지 않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역시 후보추천위원회 등의 4단계 절차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공소청장하고 동일한 맥락입니다.

수사관의 직무 등에 관한 규정이 있고요. 황운하 의원안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수사본부장을 두는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수사관 지위에 관한 조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10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신청 등과 관련해서 관련범죄의 수사 범위가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 간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국가수사위원회가 조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중수청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고소인·고발인이 지역중수청이나 수사심의위에 이의신청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일곱 번째, 여러 수사기관이 있다 보니까 수사기관 간 협력이, 경찰청 국수본이나 공수처 등과의 관계에서 협력의무 등을 규정한 내용이 있고요. 역시 수사관도 정치 행위나 직권남용을 했을 때는 처벌하는 금지행위가 있습니다.

조문 체계는 12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있는 현행 검찰청법 등과 중수청법안의 비교도 자료로 참고하겠습니다.

14쪽으로 가서 공청회 및 대체토론 요지를 기술했는데요 18쪽까지 있습니다. 이것도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고 19쪽으로 가겠습니다.

입법 필요성 관련해서 두 가지를 검토했는데요.

형사사법제도적 측면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수사·기소를 완전 분리하는 주장이 있을 수 있고 통합 유지하자는 주장이 있고 그리고 수사·기소를 혼합하자는…… 주장의 정도와 그 효과에 따라서 국가 수사 역량이나 범죄 대응력이 어떻게 될 거냐,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 등에 미칠 영향 등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봤고요.

수사·기소 분리 찬성 논거는 참고하시고요.

2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한 번씩 점검해 볼 게 헌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측면인데요. 헌법 영장신청권을 전제로 수사가 같이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되나 하는 논의가 있는데 이것 한번 논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21쪽에 헌법 89조 제16호가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검찰총장’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법률로 이름을 바꾸는 것을 규정하는 간주 규정이나 검찰총장으로 보한다는 규정과 관련돼서 논의가 필요하고요, 명칭 변경의 적절성 논의.

그리고 다른 법률과의 체계 정합성 측면에서 수사와 기소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게 현행 군사법원 군검사, 공수처 검사, 각종 특별검사 이런 경우에는 모두 보유하고 있는데 이런 것과의 관계에서 논의가 필요하고요.

또한 검찰청 폐지와 관련돼서 형사소송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개정되거나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률이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봤고요.

22쪽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쪽, 행안부 의견이 있는데 이건 조문 수정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23쪽에는 수사·기소 분리 등에 따라서 형사소송법 개정 필요사항을 저희들이 완벽하게 발췌하지는 않았지만 수사가 분리되기 때문에 이것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2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된 해외 사례가 미국 영국 일본 등 있습니다. 27쪽까지 있는데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28쪽, 공소청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법 제명하에 김용민 의원안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장 총칙의 제1조에서 4조까지 목적, 공소청 설치, 권한남용 금지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조문은 한 번 일별하시면서, 29쪽의 3조(권한남용의 금지 등)가 있고요.

30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넘어가시면 김용민 의원안, 직무 집행의 상호원조가 4조에 있고요.

31쪽의 검토보고 요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공소청 설치 방식으로 법무부장관으로 공소청을 두고 지역별로 지역공소청과 지청을 두는 체제입니다. 관할구역에 관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제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공소청 공무원의 의무로서 국민의 기본권 등 보호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청장의 지위·직무 등과 관련돼서 제2장에 ‘공소청’이라는 제목하에 공소청장의 직무, 자격과 임명, 공소청장후보추천위원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부터 8조까지 조문 넘기고 40쪽으로 가겠습니다.

40쪽은 아까 얘기했듯이 공소청장의 명칭과 관련돼서 헌법과의 관계를 한번 논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공소청장의 소속 공무원 지휘·감독을 일반적으로 할 거냐 아니면 구체적으

로 어디까지 할 거냐에 대해서 논의가 조금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소청장 임명 방식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4단계를 거쳐서 대통령이 결국 임명하게 돼 있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공소청장의 대우는 김용민 의원안은 차관 대우를 받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현행 검찰총장이 장관 대우를 받는 것과 차이 나는 부분이고요.

공소청장의 자격은 변호사 자격이 필요하고 15년 이상의 관련 경력을 요구한다는 것은 검찰총장 현행 자격요건과 동일합니다.

41쪽으로 가서, 공소청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박은정 의원안의 경우에는 7명이나 9명이고요. 김용민 의원안의 경우에는 여야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각 2명을 위원으로 임명·위촉하자는 부분이 있고요. 학계 추천 이런 부분은 세부적인 부분인데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소청 차장에 관한 규정이 쭉 있습니다. 쟁점은 크게 없고요.

42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공소청과 지청에 관한 건데 안 제3장 10조에서 13조까지 규정돼 있습니다. 이것은 큰 쟁점은 없어서 조문 보시면서 45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청 위계구조는 말씀드린 대로 2단계 구조로 축소가 돼 있고요, 이런 공소청 구조를 2단계로 했을 때의 장단점을 한 번씩은 논의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46쪽으로 넘어가서 이것도 2단계 구조로 넘어오다 보니까 항고제도를 규정하고 대검에 제출할 수 있는 재항고를 폐지하는 안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47쪽에 보면 공소청 검사, 안 제4장의 14조에서 33조까지 규정이 되어있는데요. 공소청 검사의 임명이나 보직, 자격, 결격사유, 직무, 검사에 대한 지휘·감독, 공소청 검사의 이의제기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을 일별하시면서 64쪽까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4쪽에 공소청 검사의 신분보장 등과 관련해서 공소청 검사 임명·보직이라든지 정원·보수·징계 등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정치적 중립성에 관해서 특별히 보장한다 이런 표현이 없는데 65쪽에 보시면 현행 검찰청법에 있는 검사의 신분보장 규정 그리고 검사의 보직 체청 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조항 또 검사의 정원·보수·징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한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포함시킬 건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고요.

검사의 직무 범위와 관련해서 안상에 범죄수사와 지휘·감독의 존부를 완전히 제외하는 범위가 있는데 영장 청구는 기본적으로 남아 있겠지만 지휘·감독이라든지 범죄수사의 범위를 완전히 삭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전체적으로 필요하다고 봤고요.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6쪽으로 가서 국가송무 수행 권한은 기소와 수사 분리하고 아주 100% 연관돼 있다고 보기가 어려워서 이 부분도 완전히, 지금 안상으로는 삭제가 돼 있는데 공소청에 그대로 두는 방안도 고려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그 밖의 사항은 검사 자격에 관한 규정이 있고요. 검사가 공소청장에게 이의제기권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직무위임·근평·휴직·직급·퇴직·금지행위 이런 것은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소청 직원에 관련된 사항인데 34조부터 있습니다.

34조(공소청 직원), 35조(공소청 직원의 보직), 36조(결격사유) 등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입법례를 따른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7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소청 직원에 관한 규정, 보직, 공소청 직원의 경우에 전부 다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검사하고 일반 직원은 분리해서 임명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공소청 직원의 결격사유, 일반적인 규정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김용민 의원안의 경우에 공소심의위원회와 공소청 감찰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두는 건데요, 조문 보시면서 73쪽 검토의견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3쪽, 공소심의위원회가 공소제기 및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는 시스템인데 취지는 어쨌든 민주적 정당성을 담보하려는 취지인데 안상 공소심의위원회 의결의 효력이…… 심의위원회 판단에 기록되는지 여부가 조금 문제되는 부분이 있어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는 게 필요하고요.

감찰 업무 독립성과 관련돼서 감찰위원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현행 규정처럼 대검 감찰부장을 내외부 공개특채, 이런 특례를 규정하는 부분이 없어서 이것을 언급할 건지 논의가 필요하고요.

75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칙은 검사의 파견·겸임 금지, 검사의 불기소처분 항고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조문 일별하시면서 79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청 검사의 파견·겸직 제한인데요, 김용민 의원안에 따르면 현재는 검찰청법에 검사가 법무부 소속 직원으로 직위를 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런 파견·겸임도 못하게 하고 다른 기관으로의 파견 금지도, 전부 금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취지는 인정됩니다만—80쪽입니다—법무부 직원 근무 전면 금지와 관련돼서 절대적 겸직금지가 업무 전문성 확보나 법무부와 공소청의 유기적 업무 협조 차원에서는 효과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부분은 겸직금지를 절대적으로 금지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 논의가 필요하고요.

불기소처분 항고는 설명 들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81쪽입니다.

검사의 정치관여죄·직권남용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고요. 밑에 조문이 정치관여죄, 직권남용죄 이렇게 44조, 45조에 있습니다.

조문 보시면서 다음 8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법정형이 다른 것에 비해서 너무 높아서 법정형 한번 논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83쪽 부칙의 경우에는 시행일, 경과조치 등이 규정돼 있는데요. 조문 보시면서 86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이렇게 됐는데 여러 가지 준비 상황이라든지 연

계된 법률 개정 그리고 각종 하위 법령, 대통령령, 부령 제정 등 시일 소요 등을 감안해서 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검찰청과 공소청 등 간 직무승계 경과조치는 당연한 조치고요. 검찰청 수사 중인 사건의 수사기관 이관도 법 시행에 따라서 당연히 들어가는 경과조치고요. 그리고 이 법 시행 당시 검찰총장의 지위를 어떻게 하느냐의 부분도 경과조치에 있고요. 검찰청 검사 및 직원의 공소청 검사·직원 간주하는 부분도 당연히 들어가는 부분이고, 타 법 개정 등도 간단한 개정은 타 법 개정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88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운영법입니다. 비슷한 내용은 최대한 생략하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은 법의 목적, 용어 정의 관련입니다. 여기에도 중대범죄수사청이기 때문에 중대범죄와 관련범죄 그리고 중대범죄와 관련범죄를 합한 중대범죄 등이라는 용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범위가 중요하고요.

91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1쪽의 의견을 드리면 중수청의 중대범죄 수사권을 전부 다 전유하는 이런 규정으로 돼 있는데 사건에 따라서는 경찰이라든지 다른 수사기관에…… 분할 관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봤고요.

9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련범죄 범위 설정도 개정안은 상당히 좁게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넓게 규정할 경우에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논의해서 결정하시면 될 거고요.

93쪽의 중대범죄 등의 범위와 관련돼서 정의 규정도 일부 조금 손볼 필요가 있고요. 중수청 공무원의 준수사항은 일반적인 사항이라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4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와 관련된 안 제2장인데 4조부터 9조까지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조문을 보시면서 110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수청 설치 관련해서 민형배 의원안의 경우에는 소속이 행안부장관으로 돼 있고 황운하 의원안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 소속인데 밑에 소속을 행안부장관으로 했을 때 그리고 법무부 소속으로 했을 때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이것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11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수청장 관련돼서 중수청장도 역시 직무·보수·임기·정년,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이 되고 임기는 2년, 황운하 의원안의 경우에는 3년 중임 불가, 정년 65세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중앙관서장 필요성은 약간 실무적인 문제라 넘어가도록 하고요. 중수청장의 자격 관련돼서 임명 자격, 중수청장은 변호사 자격은 요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2쪽으로 가겠습니다.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행안부에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민형배 의원안은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행안부장관이 전부 다 위원을 임명·위촉하는데 여야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각 2명이 들어가도록 한 이런 내용이 특이한 사항이고요.

그다음 하단에 그 밖의 사항으로 차장 임기·정년이 있는데 이것은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어서……

다음, 113쪽의 황운하 의원안의 경우에는 수사본부장을 수사청이나 각 지방수사청·지청에 두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청장과의 관계가 조금 문제될 소지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해 보이고요.

11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중대범죄수사청 설치와 직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검토사항은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116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수청의 수사관에 관련된 4장 규정인데 12조에서 26조까지 걸쳐 있습니다. 수사관의 직무·자격·임용 등등이 있고요. 이의제기권 그리고 인사위원회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129쪽으로 쭉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중수청 수사관의 직무는 중대범죄 수사하고 그리고 수사·공소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관련 범죄를 직무로 하는 부분이고요. 수사관 자격은 구체적으로 수사 관련 경력 이런 부분이 없는데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조문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수사관의 직급·임용 절차와 관련돼서 국무총리가 5급 이상 수사관을 추천·제청하도록 돼 있는데 국무총리보다는 행안부장관이 적절하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13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사관의 결격사유도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른 거라 넘어가도록 하고요. 수사관에 대한 지장·감독도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수사관의 이의제기권 이것도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조문 정비가 필요해 보이고요. 인사위원회 규정이 있습니다.

131쪽에 수사관의 정원·퇴직, 수사관도 역시 금지 행위로서 정치 관여 행위 금지돼 있는데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 되는 일은 금지에서 빠져 있어서 넣는 게 좋지 않겠나 싶고요. 경찰공무원법을 준용한다는 부분은 간략하게 보고드리고요.

133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은 중대범죄수사청 직원에 관련된 규정인데요. 조문 체계는 한 조문인데 장으로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정리가 조금 필요해 보이고요.

다음, 134쪽입니다.

134쪽 보칙 민형배 의원안의 경우에는 수사관의 파견 금지, 관련범죄의 범위, 이의신청 등이 있는데요. 141쪽에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시 민형배 의원안은 수사관의 파견·겸직을 전면적으로 금지했는데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해 보이고요. 관련범죄 범위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 국가수사위원회가 수사 범위를 조정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소인·고발인의 이의신청 절차와 관련해서 고소인 등이 중수청의 경우에는 지역중수청과 수사심의위원회 양쪽에 신청하고 또 이의신청이 기각될 경우에는 다시 수사심의위원회에 신청하고 또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각 결정하면 다시 국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너무 절차가 복잡하거나 절차 관계상 상호 불분명한 점이 있어서 조금 정비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142쪽에 수사심의위원회 설치·구성이 있는데요. 수사심의위원회는 법률에 명시하는 부분이 적어서 그 부분을 명시하면 되겠고요. 청장 등의 퇴직 후 공직 임용 제한 그리고 수사기관 간 상호 협력관계는 조금 일반적인 규정에 가까워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3쪽, 중수청과 다른 수사기관 간 관련범죄 사건의 이첩과 관련된 부분은 약간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봤고요. 수사기관 간 통보의무도 수사기관 간 당연히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한 규정이고요.

144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수청 수사관 역시 중수청장과 동일하게 정치 관여나 직권남용 행위에 대한 벌칙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이 너무 세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정비가 필요해 보이고요.

146쪽입니다.

부칙에 시행일과 시행 준비 있는데 시행일은 이미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거라 생략하고요.

다음, 두 번째 자료 국가수사위원회 설치법으로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항 국가수사위원회 두 번째 자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1쪽 심사경과는 생략하고요.

2쪽 총괄적 검토의 입법 배경 및 외국 사례는 이와 유사한 사례를 참고삼아 들어 놨는데 국가수사위원회하고 경찰위원회, 2018년도에 설치된 수사심의위원회는 100% 정합성은 없는데 어쨌든 참고할 만한 자료로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3페이지 하단에 외국 사례 있는데 이것도 딱 맞는 사례는 아니고요. 자세한 내용은 113쪽에 담겨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4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조문 순서별로 빠짐없이 10쪽까지 정리해 놨는데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11쪽으로 가겠습니다.

공청회·대체토론 요지도 13쪽까지 정리를 간략하게 해 놨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14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입법 필요성, 국가수사위원회 기관 자체는 독립된 행정위원회인데요. 입법정책적으로 밑에 보시는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찬반론을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될 부분이고요.

15쪽에 총 칙 제1장 제1조·2조입니다. 중요한 것은 2조인데요. 국가수사위원회가 관장하는 기관이 공수처, 중수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수사권을 가진 기관으로 적용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18쪽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수사위원회 설치·구성은 설치 위계가 중요한데요.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한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행정위원회 설치 기준을 보면 범정부적 차원에서 통합 대응이 필요한 사무로 보여지기 때문에 정부조직법제상 가능한 법리로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2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지휘·감독 관계가 조금 정비가 될 필요가 있는데 행안부나 법무부, 해양수산부 등이 관장할 범위가 있기 때문에 이중적 지휘 관계 발생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미세하게 조정하지 않으면 서로 소관 다툼이 있을 수 있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국가수사위원회는 수사제도 개선 사무와 수사권 통제 업무로 조금 더 집중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정부 부처 장관들이 정책 수립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에 규정하면 소관 다툼이 크게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비할 필요가 있고요.

2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해양경찰위원회도 여전히 존재할 수 있는데 여기와의 관계 정립하고 업무 조정이 조금 미세하게 필요하다고 봤고요.

23쪽에 보시면 중앙행정기관을 설치할 때는 정부조직법에 근거를 둬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개정안을 내서 같이 추진해야 될 부분으로 이해가 됩니다.

26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수사위원회의 구성은 역시 이것도 위원장의 경우에는 5조에 보시면 국가수사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이렇게 돼 있어서 추천위원회가 추천하고 국무총리가 제청하고 그리고 인사청문을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4단계 코스는 비슷한 맥락입니다.

29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가수사위원회 위원 추천 방식을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현재 제정안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위원 5명 중에 4명을 정부가 추천하는 그런 방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국회, 위원추천위원회로 추천을 다원화하는 제도의 취지에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변협회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외부 추천 방안을 입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3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수위의 국회 선출 위원 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대통령 소속 교섭단체와 그 밖의 교섭단체가 선출하는 위원 수를 분할해서 정확히 규정하는 방안도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봤고요.

3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가수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1차에 한하여 연임, 위원장은 연임이 불가하고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관련 입법례의 임기를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33쪽에 위원의 임기가 3년으로 대체로 나열돼 있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국가수사위원회 위원의 신분보장 관련인데요. 이것도 유사 입법례 참조해서 입법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고요.

36쪽으로 가서 국가수사위원회 위원의 겸직금지, 정치활동 금지 이렇게 9조, 10조에 규정돼 있는데 이것도 입법례를 참고해서 결정할 사항이고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39쪽입니다.

국가수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도 다른 입법례를, 40쪽에 약간의 의견을 달아 놨는데요. 결격사유를 도입하는 부분이 너무 과도하지 않도록 공무담임권 이런 것을 보장하는 것하고 균형을 고려해서 규정하면 되겠고요.

41쪽 하단에 보시면 국가경찰위원회·해양경찰위원회 결격사유를 참고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가수사위원회는 12조에서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전문위원회 이런 것을 반드시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 44쪽에 보시면 이것도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전문위원회를 두는 것은 입법적인 사항인데요. 운영 내용 구체화 방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고요.

4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가수사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도 일반적인 입법례를 따른 거고 그런 것의 범주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살펴볼 건 없고요.

48쪽에 간략하게 제척·기피·회피 대상 사무 범위라든지, 지금은 위원 본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제척사유인데 피의자인 경우에는 제척사유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그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50쪽입니다.

50쪽에 국가수사위원회의 체제·운영은 기본적으로 정족수, 의사 공개, 자문기구, 사무처 이런 식으로 규정하기 마련인데 그런 규정들이 있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검토할 사항은 53쪽에 보시면 사무처 설치, 사무처 정원 위임 형식이 위원회 규칙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은 대통령령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미세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고요.

56쪽으로 가겠습니다.

국가수사위원회의 업무와 권한이 매우 중요한 정리가 필요한데요. 59쪽으로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수사위원회에 관리·감독 기능과 업무집행 등 광범위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현행 국가경찰위원회와 비교할 때 상당히 넓은 범위에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도표에 보시면 업무·권한이 이렇게 차이 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60쪽으로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듯이 국가행정조직의 직무권한을 고려해서 업무 분장을 조금 세밀히 해야 되는데 행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법무부장관의 권한과 정책 이런 것까지 다 하다 보면 중복되고 충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비할 필요가 있고요. 역시 수사제도 개선 관련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규정하는 방안으로 정리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61쪽, 역시 국가수사위원회에 점검·조사 이런 여러 가지 수단이 있는데 이것이 수사 중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사 개입의 여지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권개입 허용의 범위하고 여부, 어떤 경우에 개입하는지를 조금 더 세밀하게 하지 않으면, 너무 빠른 단계에서 개입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독립성 보장 차원에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6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사기관 간 수사권 조정절차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데 수사기관이 지금 여러 수사기관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이런 혼선이 발생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텐데 이것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협력·조정 방안이 구체적으로 강구될 필요가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은 일단 형사소송법이나 관련 법령에서 법령상으로 규정해서 확실하게 조정하는 방안이 조금 더 미세하게 있을 수 있고요. 수사위원회가 협의·조정하기 전에 수사기관 간의 자율적인 협력·조정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것도 안 될 때는 국가수사위원회가 수사권 조정 기준을 가지고 조정하는 방안이 있는데 어쨌든 법령상이나 자율조정 방안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재 검사 권한인 특사경 지휘에 관한 권한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정리가 필요하고요.

6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가수사위원회의 조사 권한 규정이 있는데 청문회 출석 요구라든지 방문점검, 실태보고서 작성 이러한 부분이 전부 다 권한과 권력으로 전환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66쪽입니다.

이런 조사 권한 자체를 규정하는 것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인데 각 수사기관의 독립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방문점검 이런 걸 통해서 국가수사위원회가 직권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넓어지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독립성이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서 경계를 잘 터야 될 것 같고요.

69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의신청 및 수사심의신청 사건의 처리를 위한 국가수사심의위원회를 국가수사위원회 내에 두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70쪽으로 넘어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불공정한 수사권 행사를 견제하거나 수사기관을 견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기존 수사심의위원회가 가진 구속력이나 이런 게 부족한 부분을 만회하는 그런 규정이라고 보여지는데 국가수사심의위원회를 이렇게 국가수사위원회에 두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일차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71쪽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국가수사위원회 위원이 이렇게 직접 이의신청이나 수사심의신청을 처리할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게 제정안의 입장이라고 봤고요. 그리고 국가수사심의위원회가 개입했을 때 또 해당 수사심의위원회 관계 속에서 절차가 복잡해지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고요.

7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3쪽은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 등에 대해서 국가수사심의위원회에 고소인, 고발인 등이 이의를 신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75쪽으로 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국가수사위원회의 국가수사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하도록 한 법체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2018년도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 당시에 자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송치 결정을 기본적으로 처리하라는 그런 방침들이 있는데 그런 걸 고려하고 여기서 신청하더라도 또 여러 가지 절차가 상당히, 여러 가지 중첩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해서 입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76쪽으로 가서 설명드리면 국가수사심의위원회가 각 수사기관에 이첩 결정을 하는 조

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각 수사기관이 가진 권한을 고려해서 이첩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는 아직 약간 러프하게 이첩 결정을 국가수사위원회가 결정하는 대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77쪽에 국가수사심의위원회 불복 형식으로 국가수사심의위원회가 이의신청을 기각했을 때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재정신청제도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통제를 하는 그런 법원의 장치인데 여기서는 그런 부분이 형사소송법하고 잘, 78쪽에 그런 의견을 드렸는데요. 형사소송법의 규정하고 매칭이 잘 안 돼서, 도표에 보시면 현재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제도는 이렇게 절차상으로 딱 어느 정도 체제가 되어 있는데 제정안에 따른 재정신청의 경우에는 신청만 하고 대상만 있고 절차에 관해서는 좀 애매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연결시킬 건가 고민이 필요하고요.

81쪽으로 가겠습니다.

국가수사심의위원회 또는 각 수사기관에 신청된 수사심의신청 사건의 절차 규정이기 때문에 크게 쟁점되는 내용은 별로 없어서 83쪽으로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문 정도를 정비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85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수사심의위원회의 이의신청과 수사심의신청 사건을 국가수사심의위원회가 조사하는 그런 절차 규정이 있습니다. 30조가 조사 목적의 한계, 조사의 방법 등이고요.

88쪽으로 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수사심의위원회가 국가인권위법 이런 걸 고려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조사 관련 규정을 두는 것은 입법례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조사 목적의 한계라든지 이런 것을 어느 정도로 줄 건가 이런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고요.

91쪽입니다.

보칙 규정은 일반적인 규정이어서 93쪽으로 바로 들어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직원 등의 자격 사칭이나 유사명칭 사용 금지 이런 게 있는데 아주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94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별칙에서 업무상 비밀누설, 자격 사칭, 별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과태료 등은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조항입니다.

다음은 96쪽에 보시면 위원회에 진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규정은 되어 있는데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없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자격 사칭이나 유사명칭 이런 게 국가기관에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99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칙 시행일은 다른 법과 동일하게 제정안을 1년 후에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쪽입니다.

100쪽, 시행일이나 이런 부분하고 준비행위 규정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면 되겠고요.

101쪽, 위원의 임기 개시 적용례, 최초 위원의 임기, 넘기겠습니다. 크게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어서요.

그리고 103쪽에 위원장이 국무총리에게 대통령령안의 제출을 건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 조항이어서 넘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4쪽은 실무적인 어떤 법령의 세밀한 조문화 작업의 수준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4쪽으로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정환철 수석전문위원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이진수 법무부차관과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법무부부터 기관 의견을 죽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동안 검찰권 남용에 대한 지적과 우려가 있어 있으므로 올바른 검찰권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입법취지에 공감합니다.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련된 논의는 국가 수사 역량 및 범죄 대응력,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형사사법절차의 큰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수사 업무에 대한 책임성 확보,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의 실질화 등에 대한 쟁점도 병행하여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배형원 차장님.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검찰개혁 관련 법안은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형성하는 중대한 문제임과 동시에 행정부 내 업무분장에 관한 것으로서 해당 법률안들에 대해서 사법부가 찬성이나 반대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법률안들이 70년간 유지되어 온 기존 형사사법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적 변화의 파급효과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실무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청회와 법사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중에서 언급된 예상되는 문제점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입법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재판 실무와 관련된 것으로서는 재정신청제도를 좀 언급하고 싶은데요. 종래의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불송치 결정에 대한 재정신청이 들어오게 되니까 재정신청이 많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라는 생각이 되고요. 아울러서 종래에는 특정범죄의 고발인에 한해서만 재정신청을 인정했었는데 지금은 모든 고발인도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재정신청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저희가 인적·물적 자원의 확충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공소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도 종래에는 고등검찰청이 있었기 때문에 항고를 거친 후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공소청의 체제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관계가 좀 명확하게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 정도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해 주시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월요일 날 저희가 이 법안으로 공청회가 있고 공청회를 하면서 또 토론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야당 위원님들께서 혹시 염려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심사할 시간들을 가질 테니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그것에 맞게 적절하게 토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규택 위원**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예.

○**곽규택 위원** 지금 이 검찰개혁 4법에 있어 가지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사의 기소권한은 남겨 놓고 수사권한은 원칙적으로 없애겠다 하는 방향에서 법안이 된 것은 맞고, 앞으로 검토를 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제일 우려가 되는 부분이 국가수사위원회라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있었고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더라도 수사를 담당해 본 기관,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 다 우리가 경험한 것이지만 국가수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형사사법제도에서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오히려 국가수사위원회까지 논의를 함으로써 다른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안을 논의할 때 굉장히 혼란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당에서 기본적으로 검찰개혁하겠다 하는 방향대로 법안을 검토한다 하더라도 국가수사위원회 신설까지 굳이 이번에 하는 것이 맞느냐, 이것은 여당에서도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법을 먼저 시행해 보고 국가수사위원회 같은 기관이 필요하겠다 했을 때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원칙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원칙 하나고.

두 번째는 검사한테 기소권만 남기고 수사권은 뺏는다 하는 것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방향을 잡았다면. 기소권이라고 하는 것은 불기소권이 보장될 때 의미가 있는 게 기소권이거든요. 기소와 불기소는 동전의 양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검사가 각 수사기관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들에 대해서 기소를 하기 위한 기록을 검토했을 때 이게 기록 검토해 보니까 기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하면 불기소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보완수사가 필요한 경우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송치한 수사기관에다가 사건을 보내기 시작해서 보완수사를 지휘하는 형식으로 간다면 지금 사건이 자꾸 늦어지고 기관 간의 핑퐁이다, 기관 간의 책임 미루기다 하는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공소청에다가는 기소와 불기소를 결정하기 위한 보완수사의 권한, 그 기록에 한정된 보완수사의 권한은 반드시 공소청에 부여가 돼야 사건이 그렇게 막 오래 걸리고 혼선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 원칙 하나, 두 번째 원칙이

고요.

세 번째는 중대범죄수사청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법안 내용을 보면 이걸 행안부에 둘 것인가 법무부에 둘 것인가, 두 가지 안으로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검사한테서 수사권을 빼앗기는 하는데 기준에 검사가 해 왔던 수사의 기능, 국민들에 대한 중대범죄를 조기에 수사할 수 있다는 그 기능에 대해서는 필요하니까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능을 행안부에 뒀을 때 과연 이게 지금 기준에, 경찰의 전 국민을 상대로 한 막강한 수사권한 플러스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권한 이렇게 됐을 때 기준에 검찰이 갖고 있던 그런 과도한 권한이라고 공격을 하시는 그 내용이 그대로 중대범죄수사청에도 또 생길 가능성성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대범죄수사청은 만약에 신설을 하더라도 이것은 경찰과는 분리된 조직이어야 된다, 그래서 행안부에 두는 것은 또 다른 위험요인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 그 세 가지 원칙 정도만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혹시 토론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혁 위원** 저도 짧게만, 한 1분……

○**소위원장 김용민** 장동혁 위원님.

○**장동혁 위원** 저도 세부적인 논의를 하기 전에 각 수사기관 간의 업무영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정한다면 과연 국가수사위원회가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뒀을 때 부작용이 어떨 것인지 그 큰 틀을 하나 정하고 나서……

또 하나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법원행정처 차장님, 이게 지금 하드웨어에 관한 것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장동혁 위원** 그런데 형사소송법의 기본적인 체계가 검사가 수사를 하고 사법경찰관의 수사를 지휘하는 체제로 지금 모든 게 다 되어 있는데……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맞습니다.

○**장동혁 위원** 이렇게 되면 결국은 그 소프트웨어가 전체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제가 우려하는 건 그겁니다. 물론 유예기간을 시행일까지는 1년을 두니까 괜찮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고려하지 않고 하드웨어만 만들어 놓고 소프트웨어에 관한 법을 개정하다 보면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형사소송법, 이 소프트웨어 체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큰 틀이나 기본 논의는 같이하면서 이 부분이 진행되어야 문제가 없지 이것은 그냥 만들어 놓고 이것에 맞게 나중에 형사소송법 소송절차, 소프트웨어는 그때 가서 만들면, 그것도 1년 안에, 그게 다 과연 무리 없이 논의가 마무리되어질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에 따라서 이게 굴러가는 것을 한번 시뮬레이션해 보면 과연 잘 굴러갈 것인지, 권리구제에 공백은 안 생길 것인지, 각 기관 간에 어떤 충돌이나 기존 구제절차, 수사절차,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불복절차 이런 것들이 잘 맞을지에 대해서 저는 좀 같이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것을 전혀 분리해서……

이 법을 통과시켜 놓고 유예기간 안에 형사소송절차나 형사소송규칙 이런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들을 따로 개정한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생기지는 않겠습니까, 차장님?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제가 모두답변 할 때 간단히 말씀드리느라고 그 부분은 언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된다고 한다면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한 형사소송법의 여러 조항들이 같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다만 그 부분은 전문위원께서 아까 보고를 할 때 23쪽에 여러 가지 조항들이 언급이 됐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필요하겠다는 입장이고, 아울러서 공소청이나 중수청을 신설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와 병행해서 형사소송법 관련 법령이 대규모로 같이 병행돼서 개정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장동혁 위원** 그러면 수사절차나 수사지휘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증거법에 관한 모든 것들도 다 지금 손을 봐야 되는 그런 건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수사위원회를 둘 것인지에 대한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 형사소송절차에 대한 것을 어떻게, 이것부터 하고 그냥 그 논의는 완전히 뒤로 미뤄 두고 나중에 따로 한다? 과연 그게 정말 정밀하게 논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혹시 토론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윤 위원님.

○**이성윤 위원** 토론이라기보다는 이건 두 분, 법무부차관님이나 법원행정처 차장님도 형사절차의 근간을 바꾸는 법률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 법이 통과된 후에도 과연 검찰이나 법무부, 법원행정처를 포함해서 얼마나 협력을 하느냐, 협조를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 같은데.

법무부차관님이 아까 입장을 말씀하실 때 법무부가 찬성·반대가 아니고 입법정책적인 결정사항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이와 같은 검찰개혁의 입법이 되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법무부는 찬성의견입니다.

○**이성윤 위원** 국가수사위원회는 어떻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개별적인 위원회의 설치 내용과 체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입법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정부조직법상 그다음에 형사사법체계상 수사위원회의 설치 여부 및 소속, 해야 되는 역할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성윤 위원** 그러면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누는 것은 찬성하고 국가수사위원회를 두는 부분은 검토가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인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와 관련해서 공소청 등 기관을 분리해서 공소청 신설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입법 방향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의견입니다.

○**이성윤 위원** 기본적으로 이게 논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내부 구성원들이 얼마나 협조·협력을 하고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해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만든다, 수사기관을 만든다는 것에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만이 이게 유예기간이 1년이든 6개월이든 열 달이든 신속히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차관님, 지금 방금 이성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 법이 오늘부터 소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직 국가수사위원회에 대한 입장이 명확히 정리 안 되고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다가 장관님도 이미 취임하셨습니다. 그러니 법무부의 입장이, 이게 어제오늘 일도 아닌데 법무부의 입장이 지금도 논의 중이고 정리 중이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무책임한 말씀이신 것 같고, 적어도 월요일에 공청회 있고 그때 토론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 때까지는 입장이 조금 더 명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수사권 조정이 있었고 향후 검찰의 직접수사가 더 줄어들 것이 명확한 상태에서도 법무부와 검찰은 거기에 따른 인력 재배치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다시 반복될 우려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을 하신 것이니 그 것에 대한 계획도, 지금 당장은 밝히실 수 없겠지만 법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그것에 대한 법무부의 계획도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장경태 위원** 저도 의견 하나만.....

○**소위원장 김용민** 장경태 위원님.

○**장경태 위원** 저도 차관님과 차장님 또 존경하는 여러 법사위원님들 의견을 들으면서, 제가 국가수사위원회를 대표발의했지만 국가수사위원회가 완벽한 기구이고 또 무조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찌 되었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과정에서 어떤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과정이라든지 수사심의에 대한 이의제기라든지 보완수사든 이런 부분들을 과거에 검사들이 해 왔는데 결국 국민적 신뢰의 문제와 결부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수사권 혹은 수사지휘권 이렇게 너무 거창하게 가지고 오면 또 다른 논쟁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연 검찰이 그동안 해 왔던 역할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 수사기관들이 다변화되면서 어떻게 관할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것인가.

예전에는 사실 검사한테 해서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국가수사위원회라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모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막 이것만 옳다라고 주장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여러 가지 대안들을 법무부에서도 제안해 주시고 또 국민의힘의 검찰개혁안도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 갖고 저는 그 안이 어떤 안이 더 좋을까..... 물론 ‘검찰개혁은 절대 안 돼’ 이런 의견도 있으시겠지만 그러면 과연 수사·기소를 분리한다면 기존에 했던 검사의 역할을 어떻게 이관하고 이첩하는 게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국가수사위원회에 대한 우려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저도 꼭 제가 옳다고만 주장 안 할 테니까 대안을 좀 제시해 주시면 함께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장경태 위원님의 새로운 모습이십니다.

(웃음소리)

○**곽규택 위원** 원래 합리적이세요.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셨습니까?

박규택 위원님.

○**박규택 위원** 차관님, 이번에 퇴임하는 검사장·고검장들의 퇴임사들이 이프로스 계시판에 오른 것 그게 언론을 통해서 요지들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자기반성이 거의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만약에 그 입장에 있었으면 검찰 선배 또는 지휘부로서 검찰이 이렇게까지 불신받는 상황을 만들고 검찰청이 폐지될 상황에 처하게 만든 것에 대해서 국민들과 검찰의 죄 없는 후배들에게 너무도 미안하다라는 사죄로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 그리고 검찰이 폐지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피의자들의 인권, 피해자들의 인권에 공백이 발생하는 일은 없게끔 국회가 제도개선을 잘해 주면 좋겠다 이런 가정적인 희망을 담아 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의 공무원이고 후배들 앞에서 어떤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상사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런 말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취지로 말하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업무를 처리한 것 중에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늘 마음을 졸였다고 얘기하는 검사장이 한 명 있는 것 같고 또 어느 고검장 중에는 이 제도개선이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토론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나름 조금은 그래도 수긍이 가는 발언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반성이 없고 올바른 방향제시 같은 것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잘못해 놓고 검찰의 힘은 평검사들에게 있으니까 평검사들한테 힘을 내라는 등 이런 하나 마나 한 소리를 무책임하게 떠넘기고 도망가는 듯한 그런 간부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허망한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차관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 느끼는 바가 있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제가 개인적으로 그 글을 다 읽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장기간 검찰에 근무하다가 사직하게 되다 보니 개인적인 소회가 중심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은 지금 법무·검찰이 과거와는 다르게 변화해야 된다는 취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 방향성으로 저희가 변모하기 위해서 앞으로 더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규택 위원** 그리고 우리 차관님은 오늘 의견 제시하는 것이 새로 부임하신 장관님하고 협의를 하신 내용입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기본적인 큰 틀에서는 보고를 드리고 왔습니다만 지금 취임하신지 일주일여밖에 되지 않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개별 쟁점에 대해서 아직 심도 있는 보고와 검토가 이루어지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택 위원** 그래도 어쨌든 수사·기소 분리라는 정부의 공약 이것을 존중한다고 한다면, 이 법안이 정부의 법안도 아니고 민주당, 여당의 당론으로 확고하게 결정된 법안은 아니지만 그래도 민주당 의원들 다수의 의견, 정서를 반영해서 만든 법안인 것은 분명하고 또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의사하고 상당 부분 합치하는 법안인 것은 맞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법안이 입법된다는 걸 전제로 이대로 통과된다고 한다면 어떤 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지, 이걸 발의한 의원님들이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놓친 것 같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음 토론 때는 좀 제기를 해 주셔야 건설적이고 또 바로된 논의가 가능한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각에서 한번 논의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박균택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장관님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하실 일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이번 하반기 인사가 이제 한 2주 후쯤에 이루어지겠지요, 차장·부장 인사가?

○법무부차관 이진수 후속 인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박균택 위원 보통 열흘, 2주 그럴 텐데 그때 전국 검찰의 특수부 부장 자리도 배치할 생각입니까, 검사들을?

○법무부차관 이진수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기 위한 그리고 입법이 되기 전이라도 직접수사의 활동을 자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인사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포함해서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 점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말씀 주셨고요.

지금 위원님들 토론하시는 것을 보면 아마 저희가 지금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세부적인 내용들을 토론하기에 앞서서 큰 틀에서 몇 가지 논의되고 있는 쟁점들, 부딪치는 쟁점들 이런 것들이 먼저 정리가 돼 가면서 해야 이 논의가 사실은 실질적인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사·기소 분리 자체에 만약에 반대하시는 분리를 전제로 한 법안의 옳고 그름을 논의하다 보면 계속 틀이 안 맞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쟁점별로, 지금 법안에도 들어 있기는 하지만 주요 쟁점들을 전문위원님께서 별도로 리스트를 만들어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을 빠르게 정리를 해 보고 합의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합치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끝까지 쟁점이 남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큰 틀에서 정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서상.

그 정도로, 다음 회의 때 계속 논의를 더 이어 가는 것으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8항까지의 법률안은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8)
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6)
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61)
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23)
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80)
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25)
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2)
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3)

9.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63)
1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124)
1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181)
1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427)

(15시20분)

○소위원장 김용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성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및 2페이지 심사경과입니다.

해사법원에 관련된 법원조직법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광규택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각 2건의 법률안이 전체회의에 상정 후 소위에 회부되어 2025년 2월 24일 한 차례 심사된 바 있고 윤상현 의원안 등 각 4건은 관련 법률로 소위에 직회부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각각의 법률안들은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 등과 연계되어 있는데 이는 법원조직법 등의 개정이 결정되면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야 되는 후속 입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각 법률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6개 개정안은 모두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전문법원을 신설하고 소재지와 관할구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개정안은 해사법원의 명칭, 심판권, 법원의 수, 소재지 및 관할구역 등에 있어 차이가 있는데 아래 표를 보시면 먼저 명칭과 관련해서 광규택 의원안 등 3개 법률안은 해사법원으로 명칭을 정하고 있고 전재수 의원 등 2개 법률안은 해사전문법원 그리고 박찬대 의원안은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명칭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할 사건에 관련해서 광규택 의원안 등 4개 법률안은 해사민사와 해사행정을 대상으로 포함하고 그다음에 전재수 의원안은 해사민사에 외국 판결 승인·집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찬대 의원안은 해사민사와 해사행정 이외에 국제상사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심급에 관련해서 광규택 의원안 등 5개 법률안은 항소심을 포함하고 있고 전재수 의원안은 1심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치 형태는 먼저 광규택 의원안과 전재수 의원안은 부산광역시를 소재지로 하는 단일법원으로 그리고 윤상현 의원안과 정일영 의원안은 인천광역시를 소재지로 하는 단일법원 그리고 박찬대 의원안은 인천과 부산 2개 법원, 배준영 의원안은 본원을 인천에 두고 부산과 광주에 2개 지원의 형태로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보고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5개 법원에 해사전담재판부를 두고 있으나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전문법원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아서 이를 신설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해사법원의 설치 여부는 해사사건의 전문적이고 신속한 처리의 필요성, 예상 사건 수의 적정성 그다음에 사건관계인들의 사법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아랫부분입니다.

해사법원의 설치 형태나 심판권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이 해사법원의 예상 사건 수, 사건관계인들의 사법 접근성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해사법원 관련 해외 사례 그리고 해사전담재판부 운영 및 사건 수 현황은 39페이지와 4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사법원의 심판권과 관련해서 각 개정안은 관할 사건 범위 그리고 심급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요.

먼저 관할 사건 범위와 관련해서 공통적으로 상법에 해상보험과 해상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민사사건 그리고 선원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민사사건을 공통적으로 관할 사건 범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곽규택 의원 등 4개 법률안은 여기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해사민사사건과 해사행정사건을 포함하고 있고 박찬대 의원안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 그리고 국제상사사건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안은 외국 중재·판결의 승인·집행 사건을 포함하되 해사행정사건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사법원의 심급과 관련해서 곽규택 의원안 등 4개 법률안은 항소심을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고등법원을 대체해서 항소부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박찬대 의원안은 항소심을 포함하지만 고등법원을 대체하지 않고 합의부가 단독사건 항소·항고를 담당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재수 의원안은 항소심이 포함되지 않고 1심만 규정되는 형태입니다.

기타사항으로 박찬대·전재수 의원안과 같이 해사법원이 고등법원을 대체하는 형태가 아니라면 관할 고등법원도 특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규정은 성격상 법원조직법이 아니라 민사소송법에 규정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시행일도 의원안별로 다르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법안소위에서 해사법원의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설치 형태와 지역 그리고 심급, 관할 사건 범위 등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법무부차관 이진수 해사사건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전문법원

을 설치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전문법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재판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전문성 확보를 통해 국민이 얻는 효용이 제반 비용을 상회할 때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 중인 서울중앙지법, 부산지법 등 일부 법원에서 설치·운영 중인 해사사건 전담재판부의 사건 수와 증감 추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사법원을 설립하면 관할 집중을 통해서 해사사건 처리의 신속과 효율을 도모할 수 있고 법관과 법원의 전문화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은 기본적으로 해사법원 설치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해사법원을 어느 지역에 설치할지는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전문화와 효율성을 위한 관할 집중의 필요성과 국민의 사법 접근성과 소송당사자의 편의라는 두 가지 요소가 균형 있게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국을 관할하는 1개의 해사법원 또는 최대 2개의 해사법원 본원 설치안이 합리적이라는 견해입니다.

아울러 해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은 국제성 측면에서 유사한 성질이 있고 실질적으로 중첩되는 영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건 수 확보를 통한 적정한 법원 규모 달성과 해사국제상사 관련 제도의 법리 발전 등 시너지 효과를 고려하여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시행시기와 관련해서는, 해사법원 설치를 위해서는 청사를 포함한 시설과 조직, 대법원 규칙 등 마련을 위해서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해사법원은 반드시 접근성이 높은 교통 요지, 예를 들어서 인천이라고 한다면 송도국제도시 내랄지 부산이라고 한다면 부산항 인근 또는 해양수산부 청사 인근 등과 같이 접근성이 높은 교통 요지에 일정한 규모를 갖춘 독립 청사로 신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사 신축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회와 설치 지역 지자체 등에서 접근성 높은 지역에 신속히 청사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큰 틀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집행법 등 관련 분야 관련 법들에 대한 체계 정합성 등을 고려할 때 세밀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고 현재 법원에서는 세부 쟁점들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러한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의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쟁점이 될 수 있는 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법원의 관점에서 체계상 중요한 부분은 구체적인 해사법원의 심판권 범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논의는 전문법원을 만들어서 전속 관할권을 인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더 불명해진다면 나중에 소송 제기를 했었을 때 이송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해사민사사건은 어떻게 볼 것인지, 행정사건은 어떻게 볼 것인지, 아울러서 국제상사법원 말씀도 하셨는데 그 범위는 어떻게 볼 것이며 두 사건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지 등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배타적 심판권을 부여하기는 합니다마는 전문성보다 당사자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분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원이 당사자인 선원법 적용 사건이랄지 3000만 원 미만의 소액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모두 이와 같은 2개 법원에 제소를 한다면 말씀드린 대로 당사자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좀 열악해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지방법원과 중복 관할을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집행 분야에 있어서도 굳이 분류를 좀 한다면 호남권 지역에서는 해사사건으로서의 전문적 취급보다는 지리적 접근성을 보장할 필요가 높은 소형선박, 보통은 20t 미만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소형선박의 집행 사건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사법원 사건을 규정함에 있어서도 모든 선박이라고 하지 않고 등기할 수 있는 선박에 대해서만 해사법원에서 전속적으로 집행 사건을 관할하는 방법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심급에 관한 부분인데요. 현재 다수 법률안에 따르면 민사합의사건이나 행정사건의 항소심도 해사법원의 관할로 규정되어 있는 법률안이 있습니다만 저희 법원 입장에서는 해사법원에서는 1심 민사단독사건의 항소심만 관할하는 안을 합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안이 기존 지방법원이나 전문법원인 가정·행정 법원의 예와 조화를 이룰 수도 있고 현재로서는 해사법원의 규모가 비교적 소규모로 예상되기 때문에 법관의 전심판여 문제가 또 생길 수 있다는 측면도 고려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이와 같이 해사법원이 1심 지방법원 단위로 제정이 된다면 그것을 관장하는 항소심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도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개의 법원을 뒀었을 때 거기를 관장하는 해당 지역 고등법원에서 관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국제거래사건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이 서울고등법원이기 때문에 제삼의 통일된 한 군데에 별도의 항소심을 관장하는 법원을 지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 주시면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것과 관련해서 한말씀만 더 드리자면 지금 여러 안 중에서 해사사건으로 분류하는 것 중에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포함돼 있는 의원안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포함된 이유는 이와 관련된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을 중앙심판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전속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지금 해사사건으로 분류하게 되면 해사법원에서 관장하게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해사법원이 1심으로 편성이 된다라고 본다면 이 부분도 해사사건으로 봐야 될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규택 위원님.

○곽규택 위원 해사법원 설치와 관련해 가지고는 약 10여 년 전부터 사실 부산과 인천에서 필요성이 제기됐고 법원에서도 기본적으로 해사전문법원의 설치에 대해서는 찬성하

는 입장이었지만 각 지역마다 어디에 두는 것이 맞느냐 때문에 사실은 입법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부산지역 의원님, 인천지역 의원님들이 사실은 경쟁적으로 해사법원을 냈고요. 그 내용도 보면 10년 전의 법안하고 거의 똑같아요, 사실. 그런데 그 지역 의원님들이 우리 지역의 현안, 해사법원, 그래서 과거의 법을 갖다가 다 그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박찬대 의원님안이 아마 국제상사사건을 포함시켜 가지고 그랬을 경우에, 사건 수를 고려했을 때 인천과 부산에 둘 다 뒤도 팬찮은 전문법원이 탄생할 수 있겠다 하는 일종의 절충안을 내신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박찬대 의원님안에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아마 중국 같은 경우에도 해사법원에서 국제거래 관련된 사건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차장님?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조사를 해 봐야……

○곽규택 위원 예, 그래서 기본적인 방향은 해사민사와 해사행정사건, 이건 기존에 과거부터 쭉 해사전문법원일 경우에 담당해야 될 사건으로 분류했던 거고요. 여기에 국제상거래, 국제상사 관련된 부분을 포함해서 인천과 부산에 두고 그 지역을 인천과 부산으로 각 나눠서 하겠다 하는 기본 방향에는 박찬대 의원님안에 찬성을 하는 입장이고.

과거하고 다르게 최근에 조금 변수가 생겼다면 부산에 해양수산부가 이전을 하면서, 지금은 임시청사 체제지만 아마 이번 정부하에서 해양수산부의 완전 이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해사행정사건이, 부산 쪽에 사건이 아무래도 늘면서 집중화될 경향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준비기간을 충분히 둬 가지고, 명칭은 해사국제상사법원 이렇게 해 가지고 준비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되고.

항소심을 포함할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부분의 법안들이 항소심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원래는 전문법원으로 하기에는 사건 수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항소심까지 관할하는 것으로 포함을 시켰던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국제상사, 해사를 포함하는 전문법원을 만든다면 인천에 지금 고등법원이 새로 생기기로 했으니까 항소심 사건은 인천의 전문법원일 경우에는 인천고등법원에서 그리고 부산의 전문법원이 담당하는 그 관할의 항소심 사건은 부산고등법원에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접근성이나 이런 면에서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항소심은 지금 이 법안하고는 약간 다르게 인천이나 부산의 기존의 고등법원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해도 상관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장경태 위원님.

○장경태 위원 저도 해사법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워낙 사건이 복잡하다고 알고 있고 여러 관계, 지인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일본의 상선을 가지고 한국 기업이 중국인 노동자와 함께 베트남 영해에서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물품의 손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게 엄청 복잡하긴 하더라고요, 얘기 들어 보면. 그래서 필요하긴 한데 지금 법무부에서 얘기하셨던 거 보니까 사건 수도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지금 해사사건 수 몇 건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연?

○**법무부차관 이진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지방법원 두 곳, 고등법원 두 곳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장경태 위원** 지금 합계로 보면 접수된 건 123건에 23년도 기준 처리된 97건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23년 기준 처리 건수가 96건으로 그렇게 통계상으로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장경태 위원** 차장님, 그러면 해사전담재판부 사건 수가 제가 다른 보고서에 보면 연 784건이라고 돼 있는데 그 통계는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통계를 내는…… 전담재판부가 하는 사건은 700여 건인데 왜 이렇게 다른 건지 그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보충설명 드리자면 원래 전문재판부에서요 과거에는 국제거래전담재판부가 있었고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최근 10년 이내에 해사사건을 좀 더 특별히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국제거래전담재판부의 일부가 해사전담재판부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사전담재판부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부 여기 통계와는 좀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이 2024년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해사전담재판부에서 처리하고 있던 사건이 127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거래사건은 해사사건과 중복이 될 수도 있고요, 일부는 겹치지 않은 사건일 수도 있을 텐데 국제거래사건 수는 2024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103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두 사건을 합쳐 보게 되면 연간 한 230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러면 사실상 법원행정이……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2개 법원까지 만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세요, 아니면 이왕이면 만들 거 하나만 만들어 전문……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여기에 해사민사사건만을 말씀을 드렸고요. 행정법원에서 담당하는 해사행정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 수도 지금 저희가 파악하면 이게 한 60~70건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과거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사사건에 한정을 하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사건 수만은 미치지 못하겠지만 새로 제기가 된 국제상사사건까지 포함을 한다면, 지금 국제거래전담재판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국제거래사건을 포함했었을 때……

○**장경태 위원** 몇 건 정도가……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아까 말씀드린 100여 건.

○**장경태 위원** 100여 건 정도를 포함해서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그렇기 때문에 원래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법원의 규모는 합의부 하나 그다음에 항소부 하나 그리고 단독 두세 개 정도로 해서 법원장 1명과 판사 8명, 전체 법관이 9명 정도 근무하는 법원을 2개 만드는 것 정도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아울러서 또 고려해야 될 사항이 이와 같이 현재 상태는 그런데 전문법원이 만들어지게 되면 향후에 사건이 확대될 가능성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장경태 위원**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전재수 의원안이 1심이냐, 사건 수가 적으니까 항소심까지 다 해야 되느냐, 아니면 말씀하셨듯이 사건 수가 적고 재판부 숫자가 적은데 사실상 전 사건에 관여할 가능성이 또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1심만 권한을 주고 2심은 상급법원에서 그냥 하는 게 어떤가 이런 고민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결국 1·2심

다 해 버리면 그 전문법원이 모든 사건을 다 관여하거나 결정하게 된다라는 우려는 있기는 하더라고요.

○법원행정처장 배형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말씀을 드리자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 지금 항소심의 체계가 단독사건의 경우에 항소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1심 지방법원에서 항소 업무를 처리를 하고요. 1심에서 합의사건으로 처리된 사건은 2심 고등법원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것이 일반사건도 그렇고 전문법원인 가정법원이나 행정법원도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고유의 속성일 수도 있을 텐데요. 이와 같이 해사전문법원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틀을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해사 항소법원까지 만든다고 한다는 것은 좀 더 규모가 작아질 수도 있고 아울러서 그냥 해사법원이라고 해서 1심·2심 모두를 담당하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관 수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1심에서 담당했었던 판사가 항소심에서는 관여할 수 없는 전심관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합의사건의 항소심까지 해사전문법원에서 담당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아마 항소심까지 다 법원이 한다, 안 한다 이 관할에 대한 부분이 고민이 있는데 사실 배준영 의원님안이 우리가 정부조직을 하는 입장에서는 법원을 하나 두고 지원을 두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또 두 지역이 위낙 첨예하게 대표성과 상징성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다 만들어 주자 이렇게 논의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아마 재판의 숫자와 또 얼마큼 전속관할을 줄지와 또 그러면 법원 설치까지도 가는 부분이라서 그런 고민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둘 다 해 주는 안도 있지만 하나의 법원하고 2개의 지원을 해 주는 배준영 의원님안도 사실 좀 합리적이기는 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장동혁 위원님.

○장동혁 위원 차장님, 해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지금의 사건 수로만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어쨌든 사건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야 되고요. 우리가 해사법원이 없기 때문에 이천십몇 년인가요, 태안에서 기름유출 허베이 사건 났을 때 그 한 사건으로 5년간 처리를 했고요. 그 기록이 이 회의실 거의 꽉 차는 만큼의 기록이 있었고 그때 서산지원의 판사를 2배로 늘려서 거의 법원 하나를 새로, 지원 하나를 새로 추가한 것처럼 운영을 해서 사실은 5년간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해사사건 하나의 규모를 사건 수로만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우선은, 이걸 더군다나 거기에 해사·민사·형사·행정을 합치고 국제상사까지를 합친다면 저는 우선은 일단 재판부를 많이 합의부로 만들 건 아니기 때문에 부산과 인천에 2개로 나누어서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운영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기본 원칙, 그러니까 박찬대 의원안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 그리고 적어도 단독사건에서 처리했던, 항소부까지 처리할 수 있는 재판부는 있어야 된다는 건데 해사법원을 만들면 제가 바라기는 그 안에 아예 그냥 고등법원의 기능을 하는 법원까지가 다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전문성을 위해서 이제 해사법원을 두는 건데 그렇게 열심히 1심에서 해 놓은 사건을 그냥 일반 고등법원에 올려 보내서 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방향으로 가든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거니까 법원의 의

견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아까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가시를 빌라내고 뭔가 살을 잘 붙여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장동혁 위원 관할이나 그다음에 사건의 범위를 어떻게 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까 차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부분들이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인천, 부산에 해사국제상사법원을 2개 만들고 어쨌든 단독에서 처리했던 항소까지 처리할 수 있는 항소부를 두는 큰 틀의 방향을 정하고 나면……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몇 개의 그 쟁점들에 대해서 조문을 정리하고 몇 가지를 더 결정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하신가요, 아니면 지금 그 정도 방향만 정해 주고 아까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정도대로 가겠다라고 하면 이미 그 정도 대안은 마련돼 있는 건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고 저희가 검토를 할 때마다 좀 더 새로운 쟁점이 나오는 것이 지금 박찬대 의원님이 제시를 한 국제상사사건의 범위에 대해서도 조건을 보게 되면 당사자가 서로 관할합의를 하는 것이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속적 관할합의를 하는 사건은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것이 반영된다면 사실 국제거래사건은 거의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조문도 빼야 되고 사실은 외국 판결의 승인·집행을 반영할 것인지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소액사건이나 선원이 당사자인 그러한 작은 규모의 사건도 모두 해사법원으로 오게끔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복 관할의 인정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과거에 고등법원에서 담당했던 사건을 이제 해사법원으로 옮기게 되면 심급의 문제도 생길 수가 있어서 저희가 검토해야 될 부분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장동혁 위원 그렇게 검토해서 법원에서 법무부하고 협의해서 그 대안을 마련해 오시는 데 시간이 어느 정도가 좀 걸릴까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한 달 이내로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좀 더 빨리 요청하시면 저희가 박차를 가할 수 있을 텐데요. 일단 한번 속행을 해서 저희가 마련하고 조율할 수 있는 시간적 기회만 주시면 대안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위원 저 법사위 떠나기 전에 오늘까지 좀 마련을 해 오시지 안 해 오셔 가지고, 오늘 안에 어떻게 좀 보려고 했더니……

(웃음소리)

○소위원장 김용민 위원님, 진행은 제가 해야 됩니다.

○장동혁 위원 알겠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새로운 법안을 만들게 되면 지금 전담재판부의 의견도 저희가 조금 들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요 그런 준비 기회를 좀 주신다면 최대한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또 토론하실 위원님이……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만 조금……

○소위원장 김용민 예.

○곽규택 위원 지금 해사법원과 관련된 안이 나온 지는 상당히 오래됐고 법원에서도 다 검토하셨던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은 당장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겠다고 하면 조문을 조금 더 미리 정치하게 해야겠지만 어차피 전문법원 설치의 유예기간이 상당 기간 부여돼야 될 상황이면 다른 관련 법의 제·개정은 이후에 법원 의견으로 내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제 생각에는 지금 다수 의원님들이 낸 안에 대해서 여야 간에 어느 정도 합의가 된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조금 빨리 이것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지금 해수부 새롭게 하고 또 박찬대 의원님 당대표 나가시잖아요.

(웃음소리)

○장경태 위원 나오셨습니다, 이미.

○곽규택 위원 조금 더 빨리 정리가 되면 좋겠는데……

○소위원장 김용민 지금 위원님들 토론하시는 말씀들을 들어 보면 결과적으로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아무도 안 계시는 것 같고 사실상 큰 틀에서의 여야 합의는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들을 하시는 것 보면 주로 박찬대 의원님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된 것 같고요. 그 경우에 저도 한두 가지 체크를 해 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38페이지의 관할구역입니다. 보면 인천과 부산으로 나눌 경우에 인천의 관할구역이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충청남북도 이렇게 돼 있고 부산은 부산, 광주, 전북, 전남,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제주까지 돼 있네요. 지금 강원은 빠진 것 같고요, 일단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 부분이랑 그다음에 아까 접근성 말씀 주셨는데 접근성 관점에서 보자면 광주, 전남, 전북은 오히려 인천이 더 접근성이 좋은 것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드는데……

○곽규택 위원 그럴 것 같은데요. 부산하고는 교통편이 상당히 좀 제한……

○소위원장 김용민 그렇지요. 교통편 자체가 위로 올라오는 건 쉬워도, 그런 것도 한번 같이……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남북으로 나누는 것이 좋을지 동서로 나누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도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예,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항소심 문제인데 그러면 해사법원에서 1심 단독으로 했을 때의 항소심을 이 해사법원의 합의부로 갈지 아니면 관할법원인, 예를 들어 부산이면 부산지방법원의 항소부로 갈지 이런 건 어떻게 정리를……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그 부분은 저희가 1심에 지방 항소사건을 담당하는 해사법원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1심에?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그래서 1심에 합의부 2개를 만든다면 합의사건과 단독 항소사건을 할 수 있는 그런 재판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단독사건의 항소심은 해사법원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심 합의사건의 항소심을 해사법원에서 하기는 좀 어렵다

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랬을 경우에 고등법원은 어디서 할 것이냐, 관할을 하는 고등법원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좀 더 그걸 통합해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서울고등법원으로 지정을 해서 제삼의 곳으로 통합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예, 그건 그렇게 하고요.

그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각 해사법원에는 합의부가 최소 2개 정도……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항소부를 포함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합의부 1개……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합의부가 하나인데 항소부도 합의부니까요, 세 사람이 하니까. 1심 합의사건 하나 그다음에 항소사건을 하는 재판부 하나 정도를 두게 됨으로써 합의부는 2개가 되고요, 단독은 법원장을 포함해서 한 3개 정도 두는 것을 염두에는 두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알겠습니다.

그리면 방금 말씀 나누신 것처럼 여야 간에 큰 이견이 없고 박찬대 의원님안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진 상태인데 법원행정처 차장님의 말씀하셨던 몇 가지 정리해야 될 쟁점들이 남아 있는 것 같고 그 정리는 사실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 달까지 가지 않고 그 전에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장동혁 위원 위원장님, 30초만……

○소위원장 김용민 예, 말씀하십시오.

○장동혁 위원 차장님, 관할을 혹시 중복해서 선택적 관할을 두는 경우는 없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대전 같은 경우에 부산 가는 게 훨씬 편해요. 인천 가는 것 기차 타고 가기 불편합니다. 인천 가려면 무조건 차 갖고 가야 돼요, 서울 가서 이렇게 가든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서울·경기 지역이야 인천으로 한다면 그런데 충청지역 같은 경우는 되게 애매하거든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선택적 관할을 부여할 수도 있을 텐데요, 전속적 관할을 부여했을 때의 전문성하고는 좀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기는 합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동혁 위원 토지관할에 관해서야 선택적 관할을……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저희가 지금 회생법원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부산회생법원을 두고 창원지역에 있는 사건들을 부산회생법원에 제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창원에 할 수도 있고 부산에 할 수도 있고.

○장동혁 위원 하여튼 고민해 보십시오.

○소위원장 김용민 좋은 아이디어네요.

○장경태 위원 저도 짧게 말씀드리면 저도 공감하는 게 계속 관할 얘기를 하면서 고민했던 건 목포항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인천과 가깝다고 치더라도, 예를 들면 광양항에서 일어난 사건이 부산이 가깝지 인천이…… 그러니까 전라남도의 관할이 만약에 인천해사법원으로 가 버리면 그 교통 편의도 완전 다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만약에 토지관할을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어느 곳에든 다

제소를 할 수 있게 돼서, 그러면 부산에서 일어난 사건도 사실 인천에 제소할 수 있게 되는 문제가 생겨서요.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관할을 어떻게 쪼갤지 그다음에 선택적으로 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동혁 위원** 그냥 우스갯소리인데 제가 대전에 살 때 저 광주지방법원 발령 냈잖아요, 인사 희망 쓰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인사심의관한테 ‘왜 나 광주로 보냈냐’ 그랬더니 ‘거기 KTX 타면 40분이면 가지 않아요?’ 그래서 ‘KTX 없어’, 농담…… 그러니까 지금 장경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지역으로 대충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다 몰아놓으면, 실제로는 접근성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편의를 위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그 부분도 고려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좋은 지적이신데, 방금 말씀 나눈 것처럼 박찬대 의원안을 중심으로 해서 법원과 전문위원님이—일종의 대안인 것이지요—대안 문구를 좀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능한 좀 빠르게 해 주시면 그걸 기준으로 다음번 회의 때 정리를 해서 처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는 것에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달은 너무 길고요 한 2주 안에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2주가 조금 벅차면 중간에 한번 말씀 주십시오.

○**장경태 위원** 장동혁 간사님 떠나시기 전에 해 드리지요.

○**소위원장 김용민**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장동혁 위원** 2주면 힘들 것 같아요.

(웃음소리)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저희가 최대한 빨리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12항까지의 법률안은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속기사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곽규택 김용민 박균택 서영교 장경태 장동혁 전현희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전문위원 김성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법무부

차관 이진수

○법원측 참석자

법원행정처

차장 배형원